

2003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3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1. 21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03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2003년도 평창군기금운용 총규모는 총 7개기금 2,69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77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금액 : 천원)

기금명	2003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감
합계	2,697,078	2,219,723	477,355
평창군장학기금	268,751	218,150	50,601
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	109,784	111,734	△1,950
평창군노인복지기금	889,971	791,002	98,969
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	565,787	446,373	119,414
평창군여성발전기금	210,000	103,000	107,000
평창군재해대책기금	520,638	443,730	76,908
평창군재난관리기금	132,147	105,734	26,413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·道는 會計年度開始 50日전까지, 市·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始 40日전까지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第1項의 豫算案을 市·道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5日전까지, 市·郡 및 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.

③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.

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豫算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修正豫算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 제110조(기금의 운용 등)

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특별한 目的을 위하여 積省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支援을 目的으로 하는 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.

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, 出納閉鎖 후 80日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每 會計年度마다 각각 歲入·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委託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者의 責任에 관하여는 第115條 및 會計關係職員등의 責任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.

2003년도 기금예산 총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03년도 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 감(△)
합 계	2,697,078	2,219,723	477,355
평창군장학기금	268,751	218,150	50,601
저소득주민자녀 장 학 기 금	109,784	111,734	△1,950
노인복지기금	889,971	791,002	98,969
장애인복지기금	565,787	446,373	119,414
여성발전기금	210,000	103,000	107,000
재해대책기금	520,638	443,730	76,908
재난관리기금	132,147	105,734	26,413

□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(총괄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기금명	운용 실과	수입								지출									
		계	전년도 이월금	출연금	국고 (시·도) 보조금	차입금	용자 회수금	이자 수입금	기타 접수입	계	고유목적 사업비	인건비	물건비	용자금	차입금 상환	이차 보전금	내부 거래	재적립금등 (이월액)	기타
합계		2,697	2,133	455	-	-	-	109	-	2,697	78	-	-	-	-	-	-	2,619	-
평창군장학기금	자치 행정과	269	206	50				13		269	12							257	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	환경 복지과	110	105					5		110	6							104	
노인복지기금	·	890	752	100				38		890	35							855	
장애인복지기금	·	566	446	100				20		566								566	
여성발전기금	·	210	103	100				7		210								210	
재해대책기금	건설과	520	415	84				21		520	25							495	
재난관리기금	·	132	106	21				5		132								132	